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 바이섹슈얼(여성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여성성소수자¹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를 매개로 뿌리내린 남성중심주의, 혈연가족주의, 보수적 성 관념, 위계적 이분법적 성 역할 규범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여성 차별의 근거와 조건이 곧 여성성소수자 차별의 근거와 조건이며, 여성성소수자 차별의 근거와 조건이 곧 여성 차별의 근거와 조건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제7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부. 개괄—한국 사회 여성성소수자 차별 및 정부 보고서 상의 문제

1.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여성성소수자의 비가시화, 낙인 그리고 차별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1993년 본격적으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시작된 이래, 관련 단체

¹ 한국 정부나 운동 진영이 여러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합의 과정을 거쳐 채택한 표현은 따로 없다. 고유어로서의 “이반”, 보다 여러 종류의 정체성과 정치학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로서의 “퀴어”, 정체성 각각의 머리글자를 따서 조합한 LGBT, LGBTQ, LGBTQAI, LGBTQQAI,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성을 부각시키는 용어로서의 “성소수자” 등이 다채롭게 공존하며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본 여성차별철폐협약 반박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의 문제로 특히 레즈비언 및 (여성)바이섹슈얼의 경험과 더불어 FTM/MTF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당사자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차별에 공히 주목한다. MTF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뿐만 아니라 FTM트랜스젠더(트랜스남성)의 경험 역시 여성 차별의 범주와 연결하여 사고하는 까닭은, FTM트랜스젠더(트랜스남성)가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 하고 남성으로 사회 생활을 한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들이 타인에게 남자 같은 여자, 여자 답지 못한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남자로서 불충분한 남자로 인식됨으로써 받는 차별이 엄존하며 이러한 경험이 고정된 위계적 성역할 이분법을 매개로 한 여성차별과 유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현 보고서 상 LBT(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묶어내는 용어로 “여성성소수자”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잠정적인 것이며, “여성성소수자”가 포괄하는 정체성이란 비단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또한 본 단체가 집중해 온 활동의 성격상 “레즈비언”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만큼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고서의 내용상 불균형이 있을 수 있음을 일러둔다. 향후 트랜스젠더 부문에 대한 심화 보충된 내용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더 체계적으로 보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와 커뮤니티, 대사회적 문제제기 활동, 대중매체 등장 빈도, 공인들의 커밍아웃 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차츰 가시화 되어 왔다. 그러나 집행 및 처벌의 강제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단 한 조항²만을 제외하고는 성적체성 및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을 구제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만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한국의 성소수자들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 넣는다. 한국 사회의 뚜렷한 이원적 성역할 규범과 이성애주의는 비(非)트랜스젠더 이성애자만을 정상적인 존재 형태로 간주함으로써 성별 규범을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모습을 하거나/하고 이성애 외의 관계를 실천하는 이들을 비가시화 한다. 이처럼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권리의 주체도 보호의 객체도 될 수 없다.

이 가운데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고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성 성욕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도구화 하는 사회의 이중 잣대는, 아내나 성매매 종사 여성처럼 남자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이는 여성 외의 다른 여성은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 레즈비언이 게이에 비해 과소대표되며 더 심한 비가시화를 경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례로, HIV/AIDS의 주범으로 부당하게 낙인 찍히는 과정이 게이로 하여금 동성애자 정체성을 과잉대표 하도록 했다면, 지극히 남성성기중심적인 성관념은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가 쉽게 부정되도록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즈비언은 혐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비가시화의 정도가 한층 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비가시화 정도가 심각했다고 해서 레즈비언을 비롯한 여성성소수자가 안전과 권리를 담보 받았던 것은 아니다.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으로서 겪는 각종 성차별과 호모포비아 및 트랜스포비아가 맞물리며 빚어내는 여러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이는 지난 이십여 년 간 앞서 언급한 비가시성 속에서도 이른바 여자답지 않은 여자, 남자 같은 여자들을 레즈비언에 등치 시켜 간주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본인의 성별 표현이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즉, 굳이 남자 같지 않더라도) 결혼적령기 이후에도 비혼 상태를 유지한다던가, 동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던가 할 때 레즈비언으로 지레 짐작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규범화 된 여성성을 이탈한 여성 및 비혼독신여성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은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 및 차별과 완전히 맞물려 있는 것이다.

바이섹슈얼여성의 경우는 고유한 정체성으로 폭넓게 인정받기보다 사회적으로건 동성애자 커뮤니티로부터건 유난히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 혹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이성애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로 여겨지는 고충을 안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바이섹슈얼의 경험에 대한 깊은 논의와 실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바이섹슈얼여성의 경험은 레즈비언의 경험과 교집합을 이루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레즈비언 권리 이슈에 흡수되어 다루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섹슈얼여성이 레즈비언과 다르게 경험하는 삶의 문제와 관련된 권리의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바이

²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항

섹슈얼여성을 레즈비언 범주 안으로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이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차별 문제로서의 트랜스젠더 경험도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이슈의 갈래들이 많다. 관련하여 당사자 및 지지자들의 연구 및 조직화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 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접근의 다각화와 심층화가 아쉬운 현실이다. 이 지면에서는 성정체성과 구별되는 성별정체성 이슈로서의 트랜스젠더 경험에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즉, 자기가 정체화 한 성별로도 애초에 부여 받았던 성별로도 “패싱”이 안 되는 트랜스젠더들이 탈규범적 성별 표현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 트랜스젠더인 이성애자, 양성애자, 동성애자 등이 비(非)트랜스젠더와는 다르게 저마다 겪는 자기 성정체성 긍정 및 표현의 어려움,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 기숙사, 여중-여고, 남중-남고, 군대, 교도소 등 성별 분리된 공간 이용의 곤란함, 스스로 정체화 한 성별과 신분증 상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사회 생활의 불편함, 성별 변경 과정의 지난함,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성재지정수술)이 양성화 되지 않아 적절한 상담지원과 지속적 의료조치를 꾸준히 받기 어려운 현실 등을 두루 다루며 각각을 상세히 조명하는 서술³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해당 지면에서는 그보다, FTM트랜스젠더와 MTF트랜스젠더가 본인의 성별 정체화와 무관하게 이상한 여성, 교정돼야 하는 여성, 불완전한 여성, 남성과의 섹스 가능성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 등으로 해석되며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혐오 폭력에 노출되는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가시적으로 이른바 규범적 여성성을 따르지 않는 여성으로 드러나는 존재들, 남성들의 성욕을 수용할 그릇으로서의 여성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듯 보이는 존재들이 겪기 쉬운 폭력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는 여성 대상 폭력의 주요한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여성 또한 자신의 파트너로 여성을 욕망하고 택한다/택할 수 있다/택하곤 한다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규범을 벗어나는 성별 표현을 할 경우 이들이 동성을 욕망하고 동성과 관계 맺는다 (그럴 수 있다/그러곤 한다) 는 사실과 무관하게라도 혐오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로 오인 받는 비트랜스젠더 이성애자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요구 받는 성역할 규범 수행, 성별표현, 몸의 형태는 지극히 이성애주의적 남성의 관점으로 구성되어 왔고, 그러한 폭력적 정상성이 여성성소수자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어 온 것이다. 이것이 유엔여성철폐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이 협약의 이행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여성성소수자의 입장을 심분 살피고 반영해야 하는 까닭이다.

2. 한국 정부의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상의 여성성소수자 비가시화

³ 이는 각주 1에서 이미 밝혔듯 집필 주체의 현재 역량을 벗어나는 작업이기도 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불)이행 사항을 검토하는 반박보고서의 내용 안에 모두 녹여내기에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하다.

2009년 12월 여성부가 펴낸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는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여성, 트랜스젠더 등 여성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와 권리의 이슈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는다. 7쪽 “차별의 법적 사회적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하여 ‘성적 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후 보고서 전체에 걸쳐 이 키워드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당사국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해서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가하기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협약이라면, 이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여성이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을 증식키도록 하는 역할 또한 하는/해야 하는 협약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상정하는 여성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 생각하지 못했다. 여성성소수자의 비가시화는 이렇듯 여성 범주로부터의 배제, 정부 차원에서의 인지 부족 혹은 인지 없음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바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정부가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구제와 권리 보장을 여성에 대한 차별 구제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와 실천에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요구한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성소수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명시적으로 촉구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지난 2011년 6월 17일 가결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진 국가인 만큼 성소수자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대내외적 책임이 있다.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 여성의 가족구성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각종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 등을 다룬다.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근절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분야의 내용이 여성성소수자들의 고유한 경험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재구성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차별과 폭력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히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혐오 폭력을 다루는 정책 마련 및 시행이 절실하다.

다음 2부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 별로 여성성소수자 차별 구제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 이행해야 마땅할 정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 별 관련 실태 보고 및 제안

- 1. 협약 제 2조 관련: 한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성소수자 관련 정책 마련 및 이행에 힘 써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수립, 시행한 적이 없으며 여성성 소수자가 겪는 차별 실태 및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의 실태 조사조차 시행한 바 없다. 성소수자들이 편견과 혐오에 노출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본인의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조사 및 연구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감안하고라도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꼼꼼한 실태 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7년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제정하고자 했으나 일부 기독교 진영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격렬한 반대로 좌절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때 법안의 원안에 차별금지 개별 사유 항목으로 담겨 있었으나 보수 기독교 세력의 영향으로 삭제된 “성적지향” 항목을 복원시켜야 하며 기존에 포함돼 있는 “성별” 항목 외에 “성별정체성” 항목을 추가하여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법안에 가시화 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6월 17일 가결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의 찬성국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질 의무가 있다.

[요구사항]

- 한국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이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 근절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 찬성국으로서의 책임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성적지향(성정체성)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 항목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구제 및 권리 보장이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져야 할 책임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각종 관련 실태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협약 1, 13, 16조 관련: 한국 정부는 여성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 복지 제도는 이성 간 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예산 역시 그에 따라 편성된다. 하기에 비혼 독신 여성, 한부모 가족, 동성 커플, 기타 여러 형태의 공동체 등 다양한 모습을 띤 광의의 가족들이 필요한 법제도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정상 가족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대다수 여성성소수자들은 납세, 보험, 연금, 대출, 주택 마련의 우선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밀려나며 입원과 수술 등 보호자가 필요할 시 가장 신뢰하고 가까운 자를 보호자로 지정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정부는 여성성소수자들이 사회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규범적 정상 가족을 위주로 구성된 법체계를 수정, 보완하여 성소수자들에게 이들이 직접 택한 삶의 방식에 적합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그에 따라 적절한 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현재 동성간의 파트너십은 법적 혼인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 때 레즈비언 커플 같은 경우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혜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면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마련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에 따른 법제도적 지원망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성간 파트너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 구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 한국 정부는 이성애 정상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성소수자들이 택하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에 걸맞은 대안적 정책 수립으로 보다 폭넓은 사회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이성애 정상 가족 형태를 골자로 한 가족 정책을 선전하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당사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한 방식의 동성간 파트너십을 마련해 법제도화 해야 한다.

3. 협약 5, 10, 11조 관련: 한국 정부는 여성성소수자가 교육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여성으로서,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과 폭력의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여성, 트랜스젠더 등 규범적 성역할과 성별표현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성소수자들은 이른바 비트랜스젠더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정상성으로 학습시키는 교육 현장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무수한 십대 여성성소수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래들로부터 경험하는 따돌림과 괴롭힘, 교사들로부터 경험하는 무시와 모욕을 비롯한 폭력,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받는 징계 등을 호소한다. 이는 성적체성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교육권의 침해이며,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성애주의적 교육 내용 전면 개정과 교육 현장의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역할 규범을 따르지 않는 모습의 여성들과 이른바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도 비혼인 여성들은 직장에서 지속적인 희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을 부당하게 과소평가 당하는 등, 작업 환경과 승진 기회 등에서 두루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레즈비언, 바이섹슈얼로서의 성적체성이나 트랜스젠더로서의 성별정체성이

드러날 경우 더욱더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거나 암묵적으로 퇴사를 종용 받는 등 심각한 노동권의 침해가 벌어진다. 한국 정부는 모두를 위한 고용평등을 위하여 여/남간 성차별에 국한되어 온 성인지적 접근을 성적체성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확장해야 한다.

[요구사항]

- 한국 정부는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이성애주의에 기반한 성규범을 재생산하기를 중단하고 성평등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또한 기본 교과에 전제된 정상가족 중심 이성애주의 또한 전면 재검토하여 다양한 삶의 양식이 교과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피고용인을 두는 모든 노동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가 성적체성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교육권이나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협약 6조 관련: 한국 정부는 여성성소수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리고 성적체성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혐오폭력 등 여성으로서, 성소수자로서 겪는 폭력의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의 여성 정책 부문에 여성성소수자의 특수한 경험을 고려한 조치들을 반영하고, 성적체성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혐오폭력의 경우는 반드시 가중처벌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재생산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구사항]

- 한국 정부는 '부녀'로 한정돼 있는 형법상 강간죄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강간죄의 의미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동성간 성행위를 강제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여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균형법 92조를 폐지하되, 동성간 성행위가 아닌 동성간 성폭력을 법제도망 안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구도 중심의 성폭력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동성간 성폭력'을 명시할 필요 또한 절실하다.
- 한국 정부는 원가족 내부에서 성적체성,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감금, 폭행, 치료 강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교육기회박탈 등)을 가정폭력의 틀로 다룰 수 있도록 가정폭력 발생의 보다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당 사례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지망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가족의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가족을 구성해 생활해 나가는 것과 다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테면, 레즈비언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지망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쫓겨나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여성성소수자가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기 쉬움을 인지하고,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성소수자의 구조, 자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성소수자인 성매매 피해자일 경우 복합적인 사회적 낙인에 고통 받기 쉽다는 점을 살펴 이들을 지원할 섬세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이 노출됨에 따라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미처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널리 홍보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폭력 피해자인 성소수자들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성소수자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같은 여성성소수자 단체의 인력과 재정 부족이 다른 단체보다 심각한 만큼,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는 검/경찰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발생한 폭력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중처벌 하여 성소수자 대상 폭력이 정당화, 재생산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협약 12조 관련: 한국 정부는 여성성소수자가 이른바 재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저마다의 성별정체성, 건강상태, 성생활을 토대로 의료적 진단, 치료,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성성소수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권의 포괄적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여성성소수자는 이성간 삽입 성관계와 재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부인과 진료 관행으로 인해 산부인과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처 병원을 찾지 못하여 제 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못 취하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동성간 성관계 및 트랜스젠더의 몸에 대해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무지한 의료진들의 태도는 어렵게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성소수자들에게 폭력적인 경험을 안겨주기도 한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자긍심에 상처를 입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 조울증,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 상당수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방식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들이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자체에 천착하기보다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의 이른바 교정을 목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전환(성확정/성재지정)수술 및 수술 전후에 필요한 지속적 호르몬 치료 등이 사회적으로 널리 양성화 되어 있지 않아 비용 문제, 의료 사고 문제, 부당 대우 문제 등으로 고통 받는다.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신체적 안전 등을 두루 배려하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합리적인 비용 책정, 그리고 보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요구사항]

- 한국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 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건강 이슈를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몸을 재생산 도구로만 보는 산부인과적 통념을 깨고 모든 여성이 자신의 산부인과적 문제를 편안하게 상담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성정체성 및 성별정체성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담 및 진료가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널리 알리고, 상담 현장과 의료 현장에서 이 같은 방식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당사자가 존중 받고 지지 받는 환경 속에서, 안전한 의료 조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홈페이지 www.lsangdam.org

이메일 lsangdam@lsangdam.org

전화 +82-2-703-3542

팩스 +82-2-703-3543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110-110)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레즈비언들의 다채로운 삶과 고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성 이반 권리 운동 단체입니다. 1994년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 첫 레즈비언 독자 조직으로서의 문을 연 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라는 이름을 거쳐, 2005년 봄, 현재의 명칭과 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5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술한 난관 속에서도 회원 단체로서 여성 이반들의 공동체, 안식처, 버팀목 역할을 자임하며 꿋꿋이 버텨 왔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합니다. 일상과 관습과 제도에 뿌리내린,

여성에 대한 금기와 차별 그리고 폭력에 반대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고, 오직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며, 남자의 상대자로서 훌륭해야지 비로소 옳다'는 해묵은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여성 차별적, 남성 우호적 관습 및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꾸준히 수행합니다. 여자들의 우정, 여자들의 연대, 여자들의 사랑, 여자들의 섹스, 여자들의 파트너십, 여자들의 모임을 응원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고정된 이분법에 반대합니다. 여성성을 수동성에 묶어 두는 데 반기를 드는 만큼, 남성성을 권력과 폭력의 울타리에만 가둬 두는 일도 거절합니다. 여성성의 목록을 무한히 늘려나가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식의 남성성을 상상합니다.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여자답지 못한 여자',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을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로부터 새로운 여성성, 다른 남성성을 배웁니다. 몸의 생김새, 성별(표현), 성정체성이란 서로를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으로 연결 가능한 것임을 널리 알려 나갑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태도에도, 음란의 기호로 보는 태도에도 모두 문제제기 합니다. 동시에, 레즈비언 한 명 한 명이 지닌 서로 다른 욕망을 존중하며, 금기를 부수고 규범의 선을 넘는 여성들을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각기 자기만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 이야기들은 저마다 고유한 맥락 속에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칠게 구분짓기 어려운 무수한 경험과 이야기들, 여기서부터 활동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그리하여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고민거리들을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대중과 나누는 활동을 기획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으로서의 상담이 아닌, 상담자와 내담자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하는 지지와 연대로서의 상담을 지향합니다. 활동가를 포함하여 회원들 사이에 어떤 형태의 위계도 두지 않는 수평적 소통 구조를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대원칙을 무조건적으로 고집하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내외부적 자극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열린 공간을 추구합니다.

여성 이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길러 나가고, 대안적 삶의 양식을 나누며, 차별과 폭력의 피해 경험을 치유해 나가는 활동, 배우는 마음으로 다른 영역과의 교류를 모색하는 활동,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루 살피면서 그간 묻힌 경험과 기록의 지도를 그리는 활동,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 그 자체의 어긋남을 최소화하는 활동, 이것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지향이자 가치입니다. 언제나, 여성 이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충분히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체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